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86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586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7가단31146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하상현, 이지은

변론 종결 2020. 9. 10

판결 선고 2020. 11. 12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7가단311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유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F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가 합 22246호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71358호 사건(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별지<표>입금내역란 기재와 같이 111, 000, 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1, 2심 성공보수금, 2심 착수금, 2심 인지 및 송달료 명목으로 합계 23,694,300원을 공제하고 87,305,700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2심 착수금과 2심 인지 및 송달료는 이미 원고가 F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심 착수금 3, 850, 0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과 2심 인지 및 송달료 2,067,300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F 변호사의 계좌에서 2007. 1. 9. 현금으로 인출된 5,00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과 2009. 3. 31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된 14, 915, 900원(이하 '제4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돌려받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3,765,900원(제1, 3, 4금원의 합계액) 또는 25,833,200원(제1, 2, 3, 4금원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심 착수금과 2심 인지 및 송달료를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F 변호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면서 입금받은 111,000,000원에서 제1, 2금원 상당액을 공제하였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F 변호사가 공제한 제 1, 2금원과 F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송금된 제 3, 4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F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1내지 4금원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제 1내지 4금원을 몰래 빼돌려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환판사 강문희판사 김현성

별지